

장례식장 [] 영업 [] 변경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발급일 | 처리기간 ·영업신고 : 30일 ·변경신고 : 10일 |
| 장례식장 | 명칭 | | |
| | 소재지 | | |
| | 설치연월일 | | 면적 |
| | 변경사항 | 변경사유 []시설 []영업자·관리인 []기타 | |
| | |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| |
| | 영업자 | 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/법인허가번호 |
| 주소/법인 등 주소 | | 자택/법인 등 전화 | |
| 관리인 |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
| 신고인 | 성명 | 생년월일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(변경)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신고인 제출서류 | 영업신고(신규) | 1.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.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(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|
| | 변경신고 | 1.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1부 2.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축물대장 |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·구
(장사업무 담당부서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